

#### Contents

- 1 데이터 거래의 기초
- 2 마이데이터
- 3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 4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5 데이터 분쟁조정



#### 2

- 데이터에 대한 보호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 \*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등을 금지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됨.

-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논의
  - 데이터: 컴퓨터가 전자기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 내지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형 태의 데이터, 즉 디지털 데이터를 말함.
  - 데이터의 특성: (무체물성) 데이터 자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코딩된 정보 내지 전기적 신호로 서, 그 자체로는 공간을 차지하지 아니하다. (비경합성) 원본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무 한 복제가 가능하며 그 복제비용도 대체로 매우 작다. 따라서 일방이 소비한다 하여 타방의 소비를 배제할 필요가 없거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다수가 동시에 이용가능 하다.
  -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소유권 또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데이터 소유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는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논의로 귀결



-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논의
  - 데이터는 크게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위 논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계에 의하여 처음부터 익명화되어 생성된 데이터나 사후에 비식별화·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 긍정론, 부정론으로 대립하다가 점차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위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논의가 진행될수록 데이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이유는 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되고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약칭 '데이터자산'?

#### 데이터산업법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 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보호하고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봄.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 데이터산업법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데이터 가치평가 목적

목적	세부 내용
이전·거래	데이터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금융	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투자유치 및 보증서 발급
전략	기업의 가치증진, 데이터의 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소송	자산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 법적 소송 수행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기타	데이터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기업 인수합병 등

출처: 데이터 가치평가 안내서(24. 6.)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24. 6.)



#### ₭ DIA 한국데이터산업협회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데이터 가치평가의 기법



출처: 데이터 가치평가 안내서(24. 6.)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데이터 관련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 흥 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데이터 거래 관련 법령(후술)
  - [공공]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

### 데이터 거래의 기초

- 데이터 거래 관련법령
- ①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② 정보보호 및 보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 ③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 ④ 건강데이터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건강검진 결과), 국민 건강보험법(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
- ⑤ 통계법 제31조(영업비밀 침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 ⑥ 국세기본법(과세정보), 관세법(과세자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제공형

구 분	내 용	주요 법적 쟁점
데이터 양도형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래 상대방(데이터이용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거래	<ul> <li>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이용허락형의</li> <li>우 이용허락의 조건, 특히 데이터 양도인</li> </ul>
데이티	- 데이터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데이 터이용자)에게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데이터를 이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거래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 방도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에 해당	<ul> <li>대가산정 문제</li> <li>파생데이터를 이용할 권리</li> <li>데이터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li> <li>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li> </ul>
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ul> <li>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데이 터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는 형태의 거래</li> </ul>	<ul> <li>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문제</li> <li>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폐기 의무 이렇게</li> </ul>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창출형

	내 용	주요 법적 쟁점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는 방식의 거래	-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귀속 문제 - 대상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이 익의 분배 방식
개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 우 그 이용권리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 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 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 부가 문제됨.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내 용	주요 법적 쟁점
개념	- 데이터가공사업자가 데이터이용자(의뢰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데이터를 가공·정제하여 제공하는 도급 형태의 거래 - 가공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① 데이터가 공사업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생산한 데이터, ② 데이터이용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③ 제3의 데이터제공자로 부터 구매한 데이터, ④ 가공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등	- 가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명확히 규정 - 가공서비스 범위(의뢰자의 서면 요구사항)를 명확히 규정 - 가공서비스의 대가 지급방식 - 가공서비스의 재위탁 - 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사기준 및 하자보증 - 가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귀속문제 - 가공데이터의 하자보증 문제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중개거래형

	내 용	주요 법적 쟁점
개념	-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데이 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 상품을 중개하는 형태의 거래.  ① 데이터제공자와 플랫폼운영자 사이의 계약 ②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사이의 계약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중개거래형
-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함.
- (큐레이션형, 협의의 플랫폼형) 플랫폼이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보관·가공·분 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함.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o 계약 가이드라인 목차

	구성	주요내용
	1. 개요	• 활용 안내서의 목적, 적용 대상,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표준계약서와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 정리
1 . 데이터 거래와 계약	2. 데이터 거래의 이해	대이터의 정의,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법적 성격,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고려사항 안내     데이터 거래의 개념, 거래 당사자, 거래 유형 등 데이터 거래에 대한 안내
	3. 데이터 거래 계약 시 주요 고려사항	• 데이터 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주요 고려사항 및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별 고려사항 안내
II. 데이터 표준계약서 해설		<ul> <li>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데이터 증개거래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데이터 증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 계약에 대한 조문별 해설</li> </ul>
부록 1. 데이터 표준계약서 전문		대이터 재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데이터 증개거래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데이터 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 표준계약서 제시
부록 2. 데이터 표준계약서 조문 비교표 및 체크리스트		• 데이터 표준계약서(5종) 조문 비교표 및 유형별 체크리스트
부록 3. 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		<ul> <li>데이터 표준계약서 작성 시 필요사항 및 표준계약서 해설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과 응답 제공</li> </ul>
부록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내		• 제정 이유 및 배경, 주요 조분 등 소개



#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유형

- 데이터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
  - 근거: 데이터산업법 제21조

#### 제21조(표준계약서)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데이터 거래를 위한 계약 협상 및 체결 단계에서 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해당사 자간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
- 법적 구속력이 없음(강행 규정 등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 대상데이터	o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 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 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 권리자	o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 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 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 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 대상데이터 의 권리자	o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 산업디지털전환법에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이 있음.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생성된 데이터 등의 귀속문제

○ [법] 「산업 CI지털 전환 촉진법」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학 권리를 가진다.

-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 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그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생성된 데이터 등의 귀속문제

십 [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법)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2. 거래상대방	o 보유하거나 생성될 데이터를 계약상대방 과 공유할 것인가?	<ul> <li>거래의 목적, 데이터의 성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li> <li>특히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li> <li>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li> </ul>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3. 대상데 이터의 범위와 한계	o 대상데이터에 개인정 보(개인신용정보, 개인 위치정보, 전력망개인 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ul> <li>계약당사자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li> <li>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li> <li>*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li> <li>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조</li> </ul>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3. 대상데이터 의 범위와 한계	o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노 하우 등이 포함 된경우	<ul> <li>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li> <li>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두는 경우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비밀정보를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것인지 여부, 작성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여부에 대한 분쟁예 방,제공하는 목적, 비밀유지의 내용, 반환 또는 폐기방법, 손해배상, 효력유지조 항(계약종료후에도 일정한기간동안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등</li> <li>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li> <li>*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li> </ul>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문구삭제, 19, 1. 8. 개정)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ul> <li>(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li> <li>(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li> <li>(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li> <li>(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li> <li>(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li> <li>(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li> </ul>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제9조의8),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이 가능하다. 특히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o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된다.

#### o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o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 은 것이 포함된 경우	<ul> <li>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법에서 정한 방식(양수도, 라이선스 등)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li> <li>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 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 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 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 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li> </ul>
	ㅇ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
	가 포함된 경우	우 그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ㅇ 이용허락기간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b>효력유지조항</b> 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용허락기간	o 이용허락지역 (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및 지역	o 대상데이터 (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ul> <li>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API 연동, 시스템·서비스 접속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JSON 등)에 대하여도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li> <li>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등에 대하여도미리 합의할 필요</li> </ul>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 <b>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유효성)</b> 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일부만 보증하도록 하거나 대상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른 품질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의 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의 보증 범위와 수준이 높아질수록 데		
5.	의 품질과 보	이터 이용대가도 증가될 수 있다.		
대상데이터		* 하자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의 품질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보증		판결 등).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하자가 치유 가능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치		
		유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진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		
		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		
		항을 둘 필요가 있다(이용대가도 낮아질 수 있다).		

- 데이터의 품질
  - 데이터의 품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별표1] 데이터 품질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기준	내용		
완전성	물리적 구조, 논리적 설계, 필수항목의 누락 여부		
유효성	논리관계의 준수 여부,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		
일관성	데이터가 지켜야 할 속성이 일관되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 여부		
정확성	업무규칙에 따른 정확한 값인지 여부		
보안성	보안관리체계의 구축 여부 및 관리체계 수준		
유용성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충족 수준		
접근성	데이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시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활동 여부		
다양성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성 정보를 포괄하는지 여부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o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o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등(대상데이터의 범위, 업데이트 제공여부, 그 주기와 조건,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여부 등) - 거래조건(거래유형-양도형, 이용허락형, 가공서비스형인지 이용허락기 간 등 계약기간, 사용지역, 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파생데이터 를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등) - 이용대가 과금방식(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o 데이터 이용대가의 산 정방법	-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





출처: 데이터 가치평가 안내서(24.6.)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나이스디앤비
  - 신용보증기금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

1수번호		접수일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변	12					
	상호(법인영)		사업자등	변호					
신청인	주소								
	홈페이지								
	성명		부서(무서)	9)				=	
당당자	직위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WILLOW VOID		W. VILVE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한 기치평기를 신청합니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5조제1	향	
						H	¥		
			신청인(대표자)				(4128	S.b.	
rd of s	न नामा	기기과이 자 기비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ul><li>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li></ul>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음. *데이터산업법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아니 된다.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7.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o 파생데이터 는 누가 보유 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 과 공유할 것 인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을 통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말함. *산업디지털전환법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7.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o 파생데이터 는 누가 보유 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 과 공유할 것 인가?	<ul> <li>파생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생데이터의형태,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주체와 그 이용권리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li> <li>*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는 파생데이터를 "데이터이용자가 대상데이터의 활용(연계, 가공,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을 통하여 생성한 데이터"로 넓게 정의하고 있으 ** 파생데이터의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용권리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지]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li> <li>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li> </ul>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별지2] 파생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구분	파생데이터의 이름	파생데이터 항목 등	생성기간	파생데이터 이용권리 귀속	당사자 1의 이용범위	당사자 2의 이용범위
1	000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 (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년○월 ○일~ ○년 ○월○일】의 기간에 생성된 것	당사자 1( ) 당사자 2( ) 당사자 1 및 당사자 2( )	[이용목적] [제3자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000					

<sup>\*</sup> 우선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누구[당사자 1 또는 당사자 2 또는 당사자 1 및 당사자 2 모두]에게 귀속되는지 표시, 다음으로 [당사자 1 또는 당사자 2]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인 [당사자 2 또는 당사자 1]에게 파생데이터를 이용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 파생데이터가 [당사자 1 및 당사자 2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사자 1 및 당사자 2]가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내용을 기재

출처: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계약서(안) 중 [별지2]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7. 파생데이터 의	o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 방과 공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것인가?	<ul> <li>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li> <li>다만,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li> </ul>
가 사용·수익권	o 파생데이터와 불공정 행위 문제	* 데이터산업법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b>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b>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5항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8.	o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문제	-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직접 이용하기 로 하고 데이터를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유지보수 목적으로 제공받은 후 개량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대상데이터의		-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ul><li>이 대상데이터의</li><li>제 3 자 제 공</li></ul>	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 등),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sub - license)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
	문제	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 도록 협의할 수 있다.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9. 데이터의 폐기	o 계약 종료 후 대상 데이터를 제대로 폐 기하였는지 확인규 정을 둘 것인지 문제, 대상데이터 사용현 황에 대한 감시규정 을 둘 것인지 등	<ul> <li>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li> <li>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li> <li>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li> </ul>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계속)	ㅇ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			
		기문제는 <b>개인정보 폐기(개인정보 보호법 21조)</b> 와도 연결되므로, 개			
9. 데이터의 폐기		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0. 기타 거래조건	o 대상데이터 관리문 제, 대상데이터 유출 시 법적 책임문제	<ul> <li>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li> <li>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li> </ul>
	ㅇ 역외 거래문제	<ul><li>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전</li><li>비개인정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참고)</li></ul>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데이터의 국외이전 - 규제법률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비개인정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미개인정도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 <mark>통</mark> 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괴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줄처: 산업테이터 가이드라인 , 23. 1. 산업똥성자원부)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1. 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ㅇ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 률 위반여부	<ul> <li>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li> <li>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거래에 부수적으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li> </ul>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1. 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ul> <li>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li> <li>*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등을 취득한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li> <li>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li> <li>*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참조</li> </ul>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1. 데이터 거래계약에 서 공정거래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ul> <li>(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li> <li>(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수 있다.</li> </ul>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권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조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조소기업자 중 최저 사업면도의 연기배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로 중소기업자의 연기배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기배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대통령으로 장하는 연간배출에 하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업사행령 재화):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배출에 13억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연간배출에 15억원 미만     공역위학의 경우, 연간배출에 15억원 미만     공역위학의 경우, 연간배출에 15억원 미만	<ul> <li>원시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li> <li>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를 자제환기업되던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li> </ul>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u>중소기업자</u>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원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한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인참내역에 없는 시항을 요구한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점조치/시점명행(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성도자는 제한비용의 성당한 부분을 부당하게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의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자식자산건과 관련된 정보, 수공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가능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만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으를 중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자가 있는 참다인 경 수(소극적정보 hegative information)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약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뿐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청당한 사유를 입중한 경우에는 오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할 단사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로 전공한 수 있다.  ③ 현사업자는 제1할 단사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로 전공한 수 보이는 요구를 제공하는 경우 전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로 제공받는 함기적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보유할 임작범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의 사용급자,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행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의 제공하는 경우 전상자는 이나 원사업자는 최근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으로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는 급계약 체급 전 형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면서는 이나 된다.  1. 자기 또는 제공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점	우(소극정당E.negative information  위반시 서정조치/시정명(제25조)  하도급대급의 2배 범위에서 과정급 또는 벌급(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성의 순례해성, 저 4항을 위반시 해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에시  에 생명한 사육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경 건으로 하는데 작은 제공합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발계나 유용하는 경우 에 완년자가 기존 개메와 편합되다 보 는 무관한 별도의 기례에 대해 수급사 업저와 계약을 전해하는 교육에서 가급 용어였지만 가려가 생명하지 않은 존 육업자인 가역자로 제품했기나 용용이었지만 가려가 생명하지 않은 존 무업물을 이미터의 함께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1. 데이터 거래계약에 서 공정거래	o 부정경쟁 방지법 위 반여부	<ul> <li>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li> <li>*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됨.</li> <li>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li> <li>*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 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됨.</li> <li>**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li> </ul>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부정경쟁행위에 해당, 2021. 12. 7. 개정, 22. 4. 20. 시행)

####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법률 제203(1호, 2024, 2, 20, 일부개절)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 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12. 가공서비스	ㅇ 가공서비스 조건	<ul> <li>제공기한, 제공방법</li> <li>가공서비스의 범위 및 (위탁)목적</li> <li>가공서비스 대가 및 지급 방식</li> <li>서면 요구사항</li> </ul>
	ㅇ 개발 세부협의	<ul> <li>가공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협의</li> <li>수행일정, 인력 및 수급사무의 범위와 수준</li> <li>세부협의 중 계약과 가공서비스의 범위나 내용,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 제공기한과 대가의 조정</li> </ul>
	ㅇ 가공데이터의 귀속	- 결과물인 가공데이터의 권리 귀속



### 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 이슈

[별지2] 데이터이용자의 서면 요구사항

※ 본 계약에서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가공사업자에 대한 서면 요구사항은 가공 및 가공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함

- 1. 가공서비스 위탁목적
- 2. 데이터이용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별지3] 가공데이터 제공기한 및 제공방법

구분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제공방법	파일 형식	제공기한
1	000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전자우편, 저장장치 전달, API 연동, 시스템·서비스 접속 방식으로 전달 등 데이터 제공방법】	【TXT, JSON, CSV, XLSX 등 데이터 제공 파일 형식】	【○년○월○일】
2	000				



체크 항목	고려사항	주요사항		
	o 중간결과물 검수	<ul> <li>데이터 가공이 세부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거나 이용자의 의도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사전 협의된 검사 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계약의 해지나 가공데이터를 수정·보완해야 함.</li> </ul>		
12. 가공서비스	o 최종결과묵	- 데이터 가공이 세부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거나 이용자의 의도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중간결과물 검사 후 제안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사 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가공데이터를 수정·보완해야 함		
	o 품질검사와 하자	<ul> <li>가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사나 하자 인정을 위한 기준</li> <li>가공데이터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li> <li>계약 종료 후 하자보증 문제 - 하자보증기간, 보수 등</li> </ul>		



### 데이터 분쟁조정

• 데이터분쟁위원회

###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저작권법」에 따른다.

#### 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NI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53-230-4202 053-230-4210 053-230-4268 ddrc@nio or kr



### 데이터 분쟁조정

• 데이터분쟁위원회 - 절차



###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데이터 분쟁조정

• 데이터분쟁위원회 - 절차

### 제35조(분쟁의 조정)

-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 데이터 분쟁조정

• 데이터분쟁위원회 – 조정의 효력

### 제38조(조정의 효력)

-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 1.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감사합니다



